의안번호	제 39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27일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발 의 자 : 박형용, 박상돈, 최경천,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이상식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중하위 소득층 주민이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시성 있는 직접 지원이 요구됨.

○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제9조)
-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지원중단 조치 등

다. 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담당

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시장·군수 위임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붙 임
나. 조례안 예고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생략
다.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라. 비 용 추 계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해산 · 장제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 · 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 ·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 · 중 ·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 ·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 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 · 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첨부 제외 사유**

- 이 조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인 생활안정 지원(금전 또는 현물)의 경우 지원 규모 및 지원 수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